

□ 기사 내용(10.20.자 한국경제)

교수들 “결혼식 주례 어찌나”

- ◆ 연세대 A교수는 이달 말 자신이 가르친 대학원생의 결혼식 주례를 맡기로 했다가 고민에 빠졌다. 청탁금지법에 따라 외부강연에 나가는 것처럼 대학본부에 신고해야 하는지 헷갈려서다. 사례금을 얼마까지 받을 수 있는지도 모호하다. 그는 ‘신고하는 게 좋다’는 학교 측의 조언에 따랐다.

□ 국민권익위원회의 입장

- 청탁금지법 제10조에 따라 규율되는 외부강의등은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·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·홍보·토론회·세미나·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·강연·기고 등을 말함
- 결혼식 주례는 직무관련성이 없고 사적인 친분관계에 따른 것이므로 외부강의등으로 볼 수 없음
- 또한, 결혼식 주례 사례금은 결혼식 진행에 대한 감사의 표시이고 우리 사회의 전통 풍습에 따라 사회상규상 허용됨

□ 기사 내용(10.20.자 연합뉴스)

- ◆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성엽 위원장은 최근 교문위 소속 의원 등을 초청해 서울 예술의 전당에서 공연 중인 가무극 ‘잃어버린 얼굴 1895’ 를 관람할 계획이었다.
하지만 국민권익위원회에 문의한 결과, 티켓을 일괄 구매해 공짜로 주는 것은 동료 의원이라 하더라도 청탁금지법에 저촉된다는 답변을 들었다.
- ◆ 권익위 관계자는 “국회의원과 언론사 기자는 업무상 밀접한 관계에 있는 만큼 어느 한쪽이 식사나 티켓비용 등을 제공하면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” 고 밝혔다.

□ 국민권익위원회의 입장

- 동료 국회의원 사이에는 특별한 이해관계 없는 한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가액기준(5만원)을 초과하는 선물 제공이 가능함
- 국회의원과 정치부(국회 출입 등) 기자 등 직무관련이 있는 언론인 사이에 원활한 직무수행 등의 목적으로 3만원 이내의 식사 또는 5만원 이내의 선물은 가능
 - 다만, 기사를 청탁하는 등 직접적 이해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가액기준 이하의 식사나 선물도 제공할 수 없음